|  |
| --- |
| **※ 답안 작성시 유의사항**  1. 모든 문제는 2021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적용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답하시오.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외부감사법’으로,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은 ‘윤리기준’으로 표현한다.  3. 답안양식을 제시한 경우에는 답안양식에 맞게 답하시오.  4. 답의 분량(개수, 줄 등)을 제한한 경우에는 해당 분량을 초과한 부분은 채점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

**【문제 1】(17점)**

다음은 공인회계사가 준수해야 할 윤리기준과 감사인의 법적책임에 대한 물음이다.

**(물음 1)**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기준을 제정하고 있다. 윤리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윤리기준의 목적을 서술하시오.

**(물음 2)** 다음은 윤리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각 항목의 설명이 적절한지 여부를 기재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  |  |
| --- | --- |
| 항목 | 설명 |
| ① | 공인회계사는 의뢰인과의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비밀유지 강령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인회계사가 새로운 의뢰인으로부터 업무를 수임한 경우, 이전의 업무경험을 이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
| ② | 개업공인회계사는 어떠한 종류의 알선수수료도 지급하거나 수령해서는 안 된다. 다만, 개업공인회계사가 다른 회계법인 업무의 일부를 인수하고 지급하는 인수대가는 알선수수료로 보지 않는다. |
| ③ | 개업공인회계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어떠한 종류의 선물이나 접대도 받아서는 안 된다. |
| ④ | 개업공인회계사는 전문서비스의 제안과 관련하여 보수를 협상함에 있어서 본인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보수를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한 개업공인회계사가 다른 개업공인회계사보다 낮은 보수를 제시하는 것, 그 자체로는 비윤리적인 것이 아니다. |

**[답안양식]**

|  |  |  |
| --- | --- | --- |
| 항목 | 적절한가?  (예, 아니오) | 적절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 |
| ① |  |  |
| ⋮ |  |  |
| ④ |  |  |

**(물음 3)** 다음의 각 독립적인 상황별로 A회계법인의 외부감사업무 수임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  |
| --- |
| **[상황 1]**  A회계법인에서 ㈜대한의 외부감사업무를 담당해왔던 나잘나 회계사는 감사대상 기간 개시일 7개월 전 A회계법인을 퇴사한 후 ㈜대한의 재무담당이사로 이직하였다. A회계법인은 ㈜대한으로부터 외부감사인 재선임을 요청받은 상황이다.  **[상황 2]**  ㈜민국은 A회계법인에 ㈜민국의 자기주식을 대가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외부감사를 의뢰하였다.    **[상황 3]** A회계법인의 업무수행이사인 나똑똑 회계사는 여유자금을 운용할 목적으로 ㈜만세의 주식에 70% 투자하고 있는 펀드에 가입하였다. 해당 펀드 투자 금액이 나똑똑 회계사의 전체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 ㈜만세는 A회계법인에 외부감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

**[답안양식]**

|  |  |  |
| --- | --- | --- |
| 구분 | 수임 가능 여부  (예, 아니오) | 이 유 |
| [상황 1] |  |  |
| [상황 2] |  |  |
| [상황 3] |  |  |

**(물음 4)**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을 충족하여야 한다. 감사인이 독립성 훼손사실을 알게 된 경우 적절한 감사인의 대응조치를 그 시기에 따라 (1) 계약체결기한 이전, (2) 계약체결기한 이후로 구분하여 각각 1줄 이내로 서술하시오(단, 독립성 위반사유를 단기간 내에 해소할 수 없다고 가정함).

**(물음 5)** 감사인의 책임은 다양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외부감사법은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감사대상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감사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1) 책임사유, (2) 면책사유, (3) 소멸시효를 각각 서술하시오(단, 소멸시효의 경우 감사인 선임시 계약으로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함).

**(물음 6)** 공인회계사법상 특수법인인 회계법인은 상법상 유한회사의 준용규정에 따라 유한책임을 지게 된다.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로는 손해배상공동기금과 손해배상준비금이 있다. 손해배상공동기금과 손해배상준비금의 차이점을 **두 가지**만 서술하시오.

**【문제 2】(17점)**

다음은 중요성, 감사위험, 감사증거입수방법, 감사증거 등 회계감사 수행에 관련된 전반적 개념에 관한 물음이다.

**(물음 1)** 정보기술의 발달로 외부감사시 전산감사기법을 활용한 전수조사가 확대되는 추세다. 그러나 전수조사를 실시하더라도 적발위험은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 이처럼 전수조사에도 불구하고 적발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혹은 경우)를 비표본위험과 연계하여 **두 가지**만 서술하시오(단, 아래 <예시>는 제외할 것).

|  |
| --- |
| *<예시>*  *감사인의 부주의 또는 전문지식 부족* |

**(물음 2)** 감사인은 감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감사증거입수방법을 활용한다. 감사인이 실재성, 발생사실, 완전성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얻고자 할 때 적합한 감사증거입수방법을 아래에서 **모두** 선택하시오.

|  |
| --- |
| ① 실물검사  ② 문서검사(전진법)  ③ 문서검사(역진법) |

**[답안양식]**

|  |  |
| --- | --- |
| 감사목적 | 감사증거입수방법(번호 기재) |
| 실재성 |  |
| 발생사실 |  |
| 완전성 |  |

**(물음 3)** 다음은 중요성과 감사위험에 대한 설명이다. 각 항목별로 설명이 적절한지 여부를 기재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  |  |
| --- | --- |
| 항목 | 설명 |
| ① | 중요성은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사항이므로 재무제표 이용자들의 재무정보 수요에 대한 고려 없이 독립적으로 결정된다. |
| ② | 개별적으로는 중요하지 않더라도 다른 왜곡표시와 합쳐져 집합적으로 중요해질 가능성이 있다면 명백하게 사소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
| ③ | 감사인은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과 무관하게 중요한 각 거래유형과 계정잔액 및 공시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실증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해야 한다. |
| ④ | 감사위험은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어 있지 않을 때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어 있다는 의견을 표명할 위험을 포함한다. |
| ⑤ | 수행중요성이란 미수정왜곡표시가 재무제표 전체의 중요성을 초과할 확률을 적절하게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감사인이 재무제표 전체의 중요성보다 작게 설정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

**[답안양식]**

|  |  |  |
| --- | --- | --- |
| 항목 | 적절한가?  (예, 아니오) | 적절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 |
| ① |  |  |
| ⋮ |  |  |
| ⑤ |  |  |

**(물음 4)** 외부조회시 감사증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감사인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절차를 **두 가지**만 서술하시오(단, 아래 <예시>는 제외할 것).

|  |
| --- |
| *<예시>*  *- 조회서에 수신인이 적절히 표시되었으며 감사인에게 직접 발송되도록 회신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었는지에 대한 결정 등 조회서의 설계*   * *조회처에 대한 조회요청서의 발송과 회수* |

**(물음 5)** 감사증거의 질적 요건인 적합성은 개념적으로 관련성과 신뢰성 두 요소로 구성된다. 이 중 (1) 감사증거의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두 가지** 제시하고, (2) 각 요소별로 신뢰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예시를 **한 가지**씩 서술하시오(단, 아래 <예시>는 제외할 것).

|  |  |  |  |  |
| --- | --- | --- | --- | --- |
| *<예시>*   |  |  | | --- | --- | | 요소 | 예시 | | 감사증거의 원천 | 기업 내부가 아닌 외부의 독립된 원천에서 감사증거를 입수한 경우 | |

**(물음 6)** 다음은 감사증거와 감사증거입수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각 항목별로 설명이 적절한지 여부를 기재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 항목 | 설명 |
| --- | --- |
| ① | 분석적 절차는 알려진 조건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데이터 간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그러한 상관관계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수행하는 감사증거입수방법이다. |
| ② | 관찰은 어떤 과정이나 절차의 수행이 감사인에 의해 관찰될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에 사용가능하며, 수집할 수 있는 증거의 범위는 관찰이 행해진 시점으로 제한된다. |
| ③ | 질문은 공식적인 서면질의에서 비공식적인 구두질문까지 망라되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평가하는 것은 질문 절차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
| ④ | 감사인은 어떤 예외적인 상황에서 특정 감사기준의 요구사항을 이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이탈의 이유와 함께 해당 요구사항이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한 대체적 감사절차가 그 목적을 어떻게 달성하였는지를 문서화해야 한다. |
| ⑤ | 경영진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이용가능한 정보가 기업 외부에서만 입수할 수 있거나 특정 부정위험요소로 인해 감사인이 기업에서 입수한 증거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극적 조회를 실시하고, 미회신시에는 대체적 감사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

**[답안양식]**

|  |  |  |
| --- | --- | --- |
| 항목 | 적절한가?  (예, 아니오) | 적절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 |
| ① |  |  |
| ⋮ |  |  |
| ⑤ |  |  |

**【문제 3】(12점)**

다음은 주권상장법인인 ㈜한국의 20×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 감사에 관련된 상황이다.

**[상황 1 : 감사계획단계]**

|  |
| --- |
| (업무수행이사) ㈜한국은 최근 3년간 재무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으로 인해 20×1년부터 우리 법인이 회계감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업무팀원) ㈜한국은 재작년부터 매출액의 95%가 모회사와의 거래에서 발생되었는데, 이 매출액이 유상사급으로 인해 과대계상되었을 수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위험 관리 차원에서 감사계약 해지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

**(물음 1)** 감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감사인은 전반감사전략 뿐만 아니라 감사계획을 개발하여야 한다. 감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두 가지**를 각각 1줄 이내로 서술하시오(단, 아래 <예시>는 제외할 것).

|  |
| --- |
| *<예시>*  *해당 감사를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타의 계획된 감사절차* |

**(물음 2)**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특정한 재무상황이 3개 사업연도 연속된다면, 이는 외부감사법상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사유가 된다. 해당되는 재무상황 **두 가지**를 각각 1줄 이내로 서술하시오(단, 아래 <예시>는 제외할 것).

|  |
| --- |
| *<예시>*  *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현금흐름이 0보다 작은 회사* |

**(물음 3)** 감사계약의 해지는 감사인 뿐만 아니라 감사대상회사도 할 수 있다. 외부감사법상 주권상장법인이 3개 사업연도 중에 감사인을 해임할 수 있는 경우 **세 가지**를 각각 1줄 이내로 서술하시오(단, 아래 <예시>는 제외할 것).

|  |
| --- |
| *<예시>*  *-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회사로서 그 출자조건에서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 지배회사 또는 종속회사가 그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회사와 같은 지정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

**[상황 2 : 감사완료단계]**

|  |
| --- |
| (업무팀원) 유상사급에 대한 검토 결과 과거부터 매출액이 과대계상되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 당기에 감사인이 갑자기 바뀌면서 전임 감사인은 제기하지 않았던 복잡한 문제를 제기한다는 입장입니다.  (업무품질관리검토자) 총액·순액 매출인식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특히 유상사급 문제는 올해 품질관리검토시 중점 검토사항입니다.  (업무수행이사) 우선 전임 감사인과 의견을 나눠보고, 이 상황이 20×1년 ㈜한국의 감사보고서에 미치는 영향부터 검토해보겠습니다. |

**(물음 4)** 업무수행이사의 ‘20×1년 ㈜한국의 감사보고서에 미치는 영향 검토’ 지시에 따라 업무팀원은 필요한 감사절차를 수행한 후 다음과 같은 기타사항문단 초안을 작성하였다.

|  |
| --- |
| 우리는 20×1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 일부로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X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20×0년 재무제표를 수정하기 위해 적용된 조정사항들에 대하여도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해당 조정사항들은 적절하며 바르게 적용되었습니다. 우리는 위의 조정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사의 20×0년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나 검토, 기타 어떠한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20×0년 재무제표 전체에 대하여 감사의견 또는 기타 어떠한 형태의 확신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

이러한 상황은 전임 감사인이 전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 **‘A’** ) 상황이며, 당기 감사인은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수정의 적절성에 대하여 만족할 만큼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 **‘B’** ) 경우이다.

**<요구사항>**

‘A’와 ‘B’에 들어갈 적절한 표현을 각각 1줄 이내로 서술하시오.

**(물음 5)** 업무품질관리검토자는 재무제표 감사의 품질관리를 위해 검토 종결시 검토한 감사업무에 대해 문서화하여야 한다. 업무품질관리검토자가 문서화해야 할 사항 **세 가지**를 각각 1줄 이내로 서술하시오.

**【문제 4】(12점)**

A회계법인의 나잘해 회계사는 매출채권의 실재성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하고 있다. 다음의 [상황 1]은 (물음 1)과 관련된다.

**[상황 1]**

|  |
| --- |
| *∙*나잘해 회계사는 매출채권의 실재성 관련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 및 평가하였으며, 이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로 회사의 매출채권에 대한 외부조회를 실시하기로 함  *∙*외부조회 대상 선정을 위해 나잘해 회계사는 회사가 작성한 결산일 현재의 거래처별 매출채권 잔액명세서와 총계정원장을 수령함  *∙*거래처별 매출채권 잔액명세서에는 결산일 현재 거래처명, 대손충당금 설정 전 매출채권의 거래처별 금액과 합계금액이 기재되어 있음  *∙*나잘해 회계사는 총 50개의 거래처를 외부조회 대상으로 선정하고, 조회서 발송을 위하여 회사담당자로부터 50개 거래처에 대한 외부조회목록표를 입수함  *∙*외부조회목록표에는 거래처별 주소,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음 |

**(물음 1)** 감사현장책임자는 나잘해 회계사에게 외부조회를 실시하기 전에 회사가 제시한 정보의 신뢰성을 확인할 것을 지시하였다. 나잘해 회계사가 (1) 거래처별 매출채권 잔액명세서의 신뢰성 확인을 위해 수행하여야 할 절차 **두 가지**, (2) 외부조회목록표의 신뢰성 확인을 위해 수행하여야 할 절차 **한 가지**를 각각 1줄 이내로 서술하시오.

**다음의 [상황 2]는 [상황 1]에 연속되는 상황으로, (물음 2)와 (물음 3)과 관련된다.**

**[상황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잘해 회계사는 A회계법인의 통계적 표본추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직접 조회서를 발송함  *∙*매출채권 잔액명세서의 합계금액은 4,000,000원이며, 감사인의 수행중요성 금액은 60,000원임    *∙*나잘해 회계사는 수행중요성 금액을 허용왜곡표시금액으로 결정함  *∙*발송한 조회서 중 45개는 감사인이 직접 원본을 회수하고, 3개는 회사를 통해 원본을 회수하였으며, 나머지 2개는 미회수됨  [조회서 회수 및 차이내역]   (단위: 원)   |  |  |  |  |  |  | | --- | --- | --- | --- | --- | --- | | 항목 | 회수결과 | 개수 | 명세서상금액 | 확인금액 | 차이 | | ① | 감사인 회수 | 43 | 500,000 | 500,000 | - | | ② | 감사인 회수 | 1 | 25,000 | 20,000 | 5,000 | | ③ | 감사인 회수 | 1 | 20,000 | 19,000 | 1,000 | | ④ | 회사 회수 | 3 | 45,000 | 45,000 | - | | ⑤ | 미회수 | 1 | 6,000 | 6,000 | - | | ⑥ | 미회수 | 1 | 4,000 | 4,000 | - | | 합계 | | 50 | 600,000 | 594,000 | 6,000 | |

**(물음 2)** [상황 2]에 제시된 [조회서 회수 및 차이내역] 중 다음 항목에 대하여, 나잘해 회계사가 수행한 절차가 적절한지 여부를 기재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  |  |
| --- | --- |
| 항목 | 감사인의 수행절차 |
| ② | 회사의 오류로 인한 차이임을 확인하였다. 나잘해 회계사는 해당 오류 금액이 명백히 사소한 금액을 초과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표본감사 평가시 해당 차이를 고려하기로 하였다. |
| ③ | 회사의 오류로 인한 차이임을 확인하였다. 나잘해 회계사는 해당 오류 금액이 명백히 사소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표본감사 평가시 해당 차이를 고려하지 않기로 하였다. |
| ④ | 해당 거래처들은 전기 감사시 조회서가 회수되지 않아서, 회사 및 감사인 모두 대체적절차를 수행하느라 상당한 시간을 투입했었다. 나잘해 회계사는 당기 효율적인 감사 수행을 위해서, 회사의 영업담당자들로 하여금 직접 거래처를 방문하여 조회서를 회수해 줄 것을 회사에 요청했었다. |
| ⑤ | 미회수 채권 6,000원에 대해, 대체적절차로 거래상대방의 인수증으로 발생사실을 확인하고 결산일 이후 감사보고서일 전에 현금 6,000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
| ⑥ | 미회수 채권 4,000원에 대해, 대체적절차로 회사가 동 채권에 대하여 100%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음을 관련 증빙을 통해 확인하였다. |

**[답안양식]**

|  |  |  |
| --- | --- | --- |
| 항목 | 적절한가?  (예, 아니오) | 적절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 |
| ② |  |  |
| ⋮ |  |  |
| ⑥ |  |  |

**(물음 3)** 나잘해 회계사는 표본감사 결과를 평가하려고 한다. 조회서상 차이금액(항목 ②, ③)은 변이가 아니었다. 다음 요구사항별로 답하시오.

**<요구사항 1>**

모집단에 투영된 왜곡표시금액(추정왜곡표시금액)을 구하시오.

**<요구사항 2>**

위 <요구사항 1>에서 계산된 ‘모집단에 투영된 왜곡표시금액’을 **18,000원으로 가정**하여,표본위험의 허용치가 각각 35,000원, 45,000원, 55,000원인 상황별로 표본감사 결과를 통해 (1)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획득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2) 평가 근거를 ‘추정왜곡표시상한액’과 ‘허용왜곡표시금액’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한편, 감사인은 발견된 왜곡표시금액을 수정권고하였으며, 경영진은 이를 수용하였다.

**[답안양식]**

|  |  |  |
| --- | --- | --- |
| 표본위험 허용치 | (1) 감사증거  획득 여부  (예, 아니오) | (2) 평가 근거 |
| 35,000원 |  |  |
| 45,000원 |  |  |
| 55,000원 |  |  |

**(물음 4)** 나잘해 회계사는 ‘표본감사 결과가 모집단에 관한 결론에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감사현장책임자는 나잘해 회계사에게 후속 절차의 수행을 지시하였다. 나잘해 회계사가 취할 수 있는 절차 **두 가지**를 서술하시오.

**【문제 5】(6점)**

다음은 회사의 계속기업가정에 대하여 감사인이 감사절차를 수행한 결과이다.

|  |
| --- |
| **[상황 1]** ㈜대한은 최근 5개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등 계속기업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만한 사건 및 상황이 식별되었다. 회사의 향후 1년간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을 수령하여 세부 증거를 확인한 결과, 감사인은 회사의 계속기업가정은 적합하며 중요한 불확실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었다. 한편, 회사는 해당 내용을 주석에 적절하게 공시하고 있다.  **[상황 2]** ㈜민국은 여행업을 주된 영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업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였고, 지속적인 영업손실이 누적되어 당기말 현재 완전자본잠식상태가 되었다. 회사의 경영진은 최근의 위드코로나 상황을 반영하여 작성한 회사의 사업계획 및 지배회사의 자금지원확약서를 감사인에게 제시하였다. 감사인은 계속기업가정은 적합하나 계속기업가정이 지배회사의 자금지원 능력 및 실행여부에 영향을 받게 되는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회사는 해당 내용을 주석에 적절하게 공시하고 있다.  **[상황 3]** [상황 2]와 동일한 상황이나, ㈜민국은 해당 내용을 주석에 적절하게 공시하지 않았다.  **[상황 4]** ㈜만세는 항공소재의 생산 및 판매업을 주된 영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회사의 설립 후 현재까지 제품의 상용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지배회사의 자금지원이 유일한 자금조달의 원천이다. 회사는 지배회사의 자금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  |
| --- |
| 그러나 감사보고서 발행 전까지 지배회사에게 충분한 자금조달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및 지배회사의 자금지원확약서를 감사인에게 제시하지 못하였다. 회사는 해당 내용을 주석에 적절하게 공시하고 있다.  **[상황 5]** ㈜우리는 건물 임대업만을 영업으로 수행하는 회사이며, 차년도 중 회사소유의 모든 건물을 매각하고 사업을 청산할 계획이다. 당기말 현재 1년 이내 회사의 청산이 확실시 되나, 회사는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상황 6]** [상황 5]와 동일한 상황이나, ㈜우리는 청산기준에 근거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을 적절히 주석으로 공시하였다. 한편, 감사인은 회사가 청산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를 수용가능하다고 결정하였다. |

**(물음)** 각 상황별로 감사의견 및 감사보고서 작성시 포함되어야 할 문단 또는 단락을 아래에서 고르시오. 단, 핵심감사사항은 고려하지 않으며, 강조사항문단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고려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해당 문단을 포함한다.

|  |  |  |
| --- | --- | --- |
| 감사의견 |  | 문단 또는 단락 |
| ① 적정의견 |  | ㈎ 없음 |
| ② 부적정의견 |  | ㈏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
| ③ 한정의견 또는  부적정의견 |  | ㈐ 강조사항 |
| ④ 한정의견 또는  의견거절 |  |  |

**[답안양식]**

|  |  |  |
| --- | --- | --- |
| 구분 | 감사의견  (①∼④) | 문단 또는 단락  (㈎∼㈐) |
| [상황 1] |  |  |
| ⋮ |  |  |
| [상황 6] |  |  |

**【문제 6】(12점)**

주권상장법인인 ㈜한국은 해외 종속기업(A, B, C)을 보유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유일회계법인은 ㈜한국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고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문 정보>   |  |  |  |  |  |  | | --- | --- | --- | --- | --- | --- | | (단위: 억원) | | | | | | | 구분 | ㈜한국 | 해외 종속기업 | | | 조정  합계 | | A | B | C | | 매출액 | 6,000 | 1,000 | 400 | 200 | 7,440 | | 세전이익 | 400 | 60 | 15 | 12 | 480 | | 당기순손익 | 300 | 30 | (-)5 | 2 | 332 | | 자산 총계 | 8,000 | 150 | 120 | 80 | 8,200 | | 부채 총계 | 4,000 | 100 | 140 | 60 | 4,100 |   *∙*조정합계 금액은 연결재무제표 장부금액이며, 그 외의 정보는 ㈜한국과 종속기업의 별도재무제표 금액임  *∙*부문 A, B, C의 매출액은 모두 ㈜한국이 제조한 제품을 외부고객에게 판매하여 발생한 것임  *∙*부문 A와 부문 B는 해외 현지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였고, 부문 C는 회사 규모를 고려하여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음  *∙*당기 중 부문 B에서 영업담당 직원에 의한 자금횡령 사실을 발견함  <그룹업무팀의 그룹감사 업무>  *∙*유일회계법인은 그룹재무제표 전체의 중요성을 세전이익의 5%(24억원)로, 그룹에 대한 개별적인 재무적 유의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총 외부 매출액의 10%로 결정함  *∙*그룹감사의 수임단계에서 부문에 대한 감사절차에 범위제한은 없다고 판단함. 특히, 부문 B의 부정 관련 이슈도 포렌식 전문가를 활용하여 충분한 감사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함 |

**(물음 1)** 각 부문별로 유의적 부문인지 여부, 유의적 부문 여부를 결정한 이유, 부문정보에 대해 그룹업무팀 또는 그룹업무팀을 대신하는 부문감사인이 수행가능한 **모든** 업무 유형을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표현할 때, 각 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기재 또는 서술하시오(단, 그룹업무팀의 그룹감사와 관련한 전문가적 판단이 유효하다고 가정함).

**[유의적 부문 결정 및 수행가능한 업무유형]**

|  |  |  |  |
| --- | --- | --- | --- |
| 부문명 | 유의적 부문 여부  (예, 아니오) | 유의적 부문 여부 결정이유 | 수행가능한 모든 업무유형 |
| ㈜한국 | ① | ② | ③ |
| A | ④ | ⑤ | ⑥ |
| B | ⑦ | ⑧ | ⑨ |
| C | ⑩ | ⑪ | ⑫ |

**[답안양식]**

|  |  |
| --- | --- |
| ① |  |
| ⋮ |  |
| ⑫ |  |

**(물음 2)** 그룹업무팀이 부문감사인의 적격성을 파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항목 **두 가지**를 각각1줄 이내로 서술하시오(단, 아래 <예시>는 제외할 것).

|  |
| --- |
| *<예시>*  *부문감사인이 해당 부문재무정보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물음 3)** 그룹업무팀은 부문 B의 자금횡령에 ㈜한국의 상법상 이사인 재무담당 임원 나허세가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룹업무팀이 나허세의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의사소통해야 할 회사 내 상대, 각 상대별 의사소통 유형 및 관련 근거를 **모두** 기재하시오.

**[답안양식]**

|  |  |  |  |
| --- | --- | --- | --- |
| 구분 | 의사소통 상대 | 의사소통 유형  (통보, 보고, 커뮤니케이션) | 관련 근거  (회계감사기준, 외부감사법) |
| ① |  |  |  |
| ② |  |  |  |
| ③ |  |  |  |

**【문제 7】(6점)**

A회계법인은 주권상장법인인 ㈜민국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민국의 해외투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인지하였다.

|  |
| --- |
| *∙*㈜민국은 20×1년 4분기 중 해외법인에 200억원을 신규 투자하여 40%의 지분을 확보함  *∙*피투자 해외법인은 조세회피처에 본사를 둔 실체가 없는 회사(paper company)임  *∙*피투자 해외법인의 나머지 60% 지분은 3인의 다른 주주가 소유함  *∙*피투자 해외법인의 자산은 대부분 해외 소재 투자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음 |

A회계법인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중요성 기준을 30억원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이라고 판단되는 금액 기준을 중요성 기준금액의 4배로 결정하였다.

**(물음 1)** 다음은 A회계법인이 주요 감사항목이라 판단한 사항이며, 그 이외에 고려할 감사항목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  |
| --- |
| *∙*20×1년 3분기까지 해외 매출의 기간귀속,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 그룹감사 관련 사항을 감사위원회와 커뮤니케이션함  *∙*해외 매출의 기간귀속 및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를 유의적 감사인주의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판단함  *∙*20×1년 4분기 중의 해외 신규 투자거래 발생사실이 연간감사에 가장 유의적인 사항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와 추가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여 핵심감사사항을 결정할 계획임 |

㈜민국은 상장법인이므로 핵심감사사항을 선정하여야 한다. 감사인이 핵심감사사항 선정과정에서 고려해야하는 사항 **세 가지**를 서술하고, 이러한 고려사항들을 ㈜민국의 상황에 적용하는 경우 각 고려사항별로 관련 감사항목을 **모두** 기재하시오.

**[답안양식]**

|  |  |  |
| --- | --- | --- |
| 구분 | 고려사항 | 감사항목 |
| ① |  |  |
| ② |  |  |
| ③ |  |  |

**(물음 2)** A회계법인이 해외 신규 투자와 관련하여 계약서 등 감사종료시점까지 입수가능한 모든 감사증거를 확인한 결과 발견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 --- |
| *∙*기타 주주 3인에 대한 정보, 기타 주주 3인과 ㈜민국과의 관계, 기타 주주 3인 간의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없음  *∙*피투자 법인의 해외 소재 투자부동산에 대해 감사보고서일 현재까지 실재성을 확인하기 어려움  *∙*감사팀은 해당 사항을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으로 판단함 |

위와 같은 상황에서 A회계법인은 (1) 감사의견 및 핵심감사사항 항목을 감사보고서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1줄 이내로 서술하고, (2) 그와 같이 반영해야 하는 근거를 2줄 이내로 서술하시오.

**【문제 8】(6점)**

㈜한국은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제조·판매하며, B회계법인은 ㈜한국의 20×1년 재무제표에 대한 초도감사를 수행하였다.

|  |
| --- |
| *∙*20×0년 중 ㈜한국이 판매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한국에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한국의 경영진은 외부 기술 전문가의 평가보고서를 활용하여 20×0년 말 추정 배상금액에 대한 충당부채를 인식함  *∙*B회계법인은 소송 관련 충당부채의 추정을 유의적 위험으로 평가함 |

**(물음 1)** B회계법인이 소송 및 배상청구를 완전하게 식별하기 위하여 수행하여야 하는 일반적인 감사절차를 **두 가지**만 서술하시오(단, 아래 <예시>는 제외할 것).

|  |
| --- |
| *<예시>*  *경영진,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내부 법률고문 등 기업 내부의 다른 인원에게 질문함* |

**(물음 2)** B회계법인이 수행한 감사절차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항목 | 감사절차 |
| ① | 경영진이 20×0년에 활용한 외부 평가보고서는 20×1년과 다른 전문가가 발행하였으므로 비교가능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을 문서화함 |
| ② | 예상되는 배상금액의 추정이 경영진에게 보고된 사업계획과 일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이사회의사록을 입수하여 확인하고 문서화함 |
| ③ | 경영진의 다른 회계추정치에 예상 배상금액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었는지 확인하고 대체적인 가정에 대한 평가는 필요하지 않다고 문서화함 |
| ④ | 감사보고서일 직전까지 후속사건 식별을 위한 절차들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하였으나, 20×2년 2월 재무제표는 ㈜한국의 월차결산 지연으로 열람하지 못함 |

위의 각 항목별로 B회계법인이 수행한 절차가 적절한지 여부를 기재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답안양식]**

|  |  |  |
| --- | --- | --- |
| 항목 | 적절한가?  (예, 아니오) | 적절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 |
| ① |  |  |
| ⋮ |  |  |
| ④ |  |  |

**【문제 9】(12점)**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은 외부감사법에 따라 외부감사법 제8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감사하여야 한다.

**(물음 1)** 다음은 각 감사대상회사에 관한 설명이다.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에 대하여 각 회사가 외부감사법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인지 여부를 기재하고, 감사대상이 아닌 경우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  |  |
| --- | --- |
| 항목 | 설명 |
| ① | ㈜대한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2021년 말 현재 자산총액은 1조 5천억원이다. |
| ② | ㈜민국은 위 ㈜대한의 종속기업이며 비상장 주식회사이다. ㈜민국의 2021년 말 현재 자산총액은 7천억원이다. |
| ③ | ㈜만세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2021년 말 현재 자산총액은 8백억원이다. |
| ④ | ㈜한국은 2023년 중 신규상장을 예정하여 2022년 감사인을 지정받았으며, 2021년 말 현재 자산총액은 6천억원이다. |

**[답안양식]**

|  |  |  |
| --- | --- | --- |
| 항목 | 감사대상인가?  (예, 아니오) | 감사대상이 아닌 경우, 그 이유 |
| ① |  |  |
| ⋮ |  |  |
| ④ |  |  |

**다음은 (물음 2)∼(물음 4)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다.**

|  |
| --- |
| C회계법인은 전기자동차 임대업을 영위하는 주권상장법인(대기업) ㈜국민의 2022 회계연도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통합감사를 수행하고 있다. |

**(물음 2)** C회계법인의 전산감사 전문가인 나정보 회계사는 전반적인 감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통제환경 및 정보기술(IT) 일반통제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해하였다.

|  |
| --- |
| *∙*㈜국민은 재무보고 목적으로 ERP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음  *∙*㈜국민에는 전사 IT팀이 조직되어 있으며, 구매팀 내에도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IT담당자가 배치되어 있음  *∙*ERP에 대한 쓰기와 읽기 권한은 구매팀 구성원 모두에게 부여되어 있음  *∙*구매팀 내 해외구매 담당자는 미국에서 출시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고자, 차량 구매단가를 외화로 등록하기 위한 ERP상 추가 기능 변경을 구매팀 내 IT담당자에게 요청하였음  *∙*구매팀 내 IT담당자는 이와 같은 ERP 변경 요청을 실행하고, 운영환경으로 이전 후 외화 구매단가 등록을 진행하면서 변경사항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하였음 |

위의 사항에서 정보기술 일반통제와 관련하여 식별 가능한 통제미비점을 **세 가지**만 각각 2줄 이내로 서술하시오.

**(물음 3)** 다음은 ㈜국민의 자금 프로세스에 대한 통제기술서의 일부이다.

|  |  |
| --- | --- |
| 항목 | 통제활동 |
| ① | 자금팀 담당자는 분기별로 자금수지표를 작성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잔액 명세서를 첨부하여 팀장의 승인을 받는다. |
| ② | 자금 이체의 승인 권한은 자금팀 팀장에게만 부여되어 있다. |
| ③ | 자금팀 담당자는 일일 자금 이체 내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자금팀 팀장의 승인을 받으며, 팀장은 이를 ERP에 등록하고 이체를 실행한다. |
| ④ | 자금팀 팀장이 자금 이체 실행시 ERP상 관련 계정이 자동으로 회계처리 된다. |
| ⑤ | 통장 및 거래인감 실물은 잠금장치가 있는 금고에 보관하며, 비밀번호는 자금팀 팀장이 수시로 변경한다. |

위 통제기술서의 각 항목별로 식별 가능한 통제미비점이 있는지 여부를 기재하고, 통제미비점이 있는 경우 경영진에게 권고할 개선안을 2줄 이내로 서술하시오.

**[답안양식]**

|  |  |  |
| --- | --- | --- |
| 항목 | 통제미비점인가?  (예, 아니오) | 통제미비점이 있는 경우, 개선안 |
| ① |  |  |
| ⋮ |  |  |
| ⑤ |  |  |

**(물음 4)** C회계법인은 ㈜국민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민의 감사위원회와 논의하였다. 다음의 설명이 내부통제의 미비점 및 그에 대한 지배기구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한지 여부를 기재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  |  |
| --- | --- |
| 항목 | 설명 |
| ① | 중요한 취약점이 하나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기업의 내부통제는 효과적이라고 간주될 수 없다. |
| ② | 감사인의 목적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감사위원회와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을 포함한다. |
| ③ | 감사인은 통합감사 중 식별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모든 미비점을 감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

**[답안양식]**

|  |  |  |
| --- | --- | --- |
| 항목 | 적절한가?  (예, 아니오) | 적절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 |
| ① |  |  |
| ② |  |  |
| ③ |  |  |

**- 끝 -**

여 백